HILLSTATE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현대건설

※ 2022년 12월 1일(월) 계약된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급대상,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내용 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최초 모집공고 47~62P)
※ 최초 모집공고 시 옵션변경 중도금 납부일자 2023.10.10 에서 '2024.06.07.' 로 변경되었습니다.
① 추가 선택품목 - 가구, 마감재,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구분	품목	적용실	판매액	공급금액
1	파인시에라마감	거실	1,460,000	14,600,000
2	실내붙박장 확장형	침실2	841개 선택제외	1,470,000
3	특실2 확장형	침실3	1,160,000	1,740,000
4	아일랜드식탁장 기능추가	식탁장	59~84타입 : 5,600,000	5,600,000
			59A : 4,600,000	4,600,000
			59B : 3,600,000	3,600,000

구분	품목	적용실	판매액	공급금액
1	파인시에라마감	거실	59형	1,460,000
2	실내붙박장 확장형	침실2	841개 선택제외	1,470,000
3	특실2 확장형	침실3	84형	1,740,000
4	아일랜드식탁장 기능추가	식탁장	59~84타입 : 5,600,000	5,600,000
			59A : 4,600,000	4,600,000
			59B : 3,600,000	3,600,000
5	주방스탠드조명	주방	59형	220,000
			84형	330,000
6	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	59형	4,180,000
			84형	5,280,000
7	욕실거울 확장형	욕실	59형	640,000
			84형	660,000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중하시기 바라며, 마속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십시오.

■ 한국부동산원에 청약을 접수한 청약을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청약신청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 이후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에서 청약 및 계약금 납부가 불가능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해당 지역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이 적용되는 지역우선 공급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건설 사업주체, 분양주체, 분양전환공공주택주체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해약)입주자 되어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일반공급제 1순위 청약자 중 중복신청 시 최초 청약 통장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중복청약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해약)입주자 되어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일반공급 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3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 충족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 이상 충족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횟수 6회 이상 충족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HILLSTATE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현대건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VII 계약체결 일정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2.12.26(월) ~ 2022.12.28(수), 3일간, 10:00~17:00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견본주택 (주소 : 천안시 두정동 1435번지)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계약 체결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④ 수입인지(인지세)	본인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⑤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⑥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배우자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⑦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제출을 의무화 함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당첨자 본인만 계약 가능합니다. (대리인 계약 불가)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분양계약체결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과소)납부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전자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1억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전원 포함)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1차 계약금)	KB국민은행	81279-07300-0017	㈜무궁화신탁	입금 예시 :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계약서 명시)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계좌는 가상 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KB국민은행 / 계좌번호 648001-04-213364 / 예금주 : ㈜무궁화신탁]로 관리됩니다.
※ 1차 계약금 납부 : 위 명시된 계좌로 해당 동호수 및 계약자를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 시 세대별로 별도 가상 계좌가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ex)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하여야 하며, 위 분양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로서 계약자가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체결한 이자후불제 대출 약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을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 등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기간 만료 시(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 시)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금융조건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사정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기관의 특유상(업)조, 연체 등) 및 대출현황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담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 예정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단지로 입주지정 기간은 60일 이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커뮤니티시설(클럽하우스,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 H아이숲,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스카이 라운지(49F)),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 주차장 출입 가능한 높이 제한
▪ 지하1층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7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이며, 위치 및 동선은 실시설계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2~5층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이며, 위치 및 동선은 위치 및 동선은 실시설계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발코니확장
(1)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3.10.10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59A	11,880,000	1,188,000	1,188,000	9,504,000	
59B	9,350,000	935,000	935,000	7,480,000	
59C	6,710,000	671,000	671,000	5,368,000	
59D	6,160,000	616,000	616,000	4,928,000	
59E	6,380,000	638,000	638,000	5,104,000	
84A	15,840,000	1,584,000	1,584,000	12,672,000	
84B	11,880,000	1,188,000	1,188,000	9,504,000	
84C	9,680,000	968,000	968,000	7,744,000	
84D	17,160,000	1,716,000	1,716,000	13,728,000	
84E	12,980,000	1,298,000	1,298,000	10,384,000	
84F	9,790,000	979,000	979,000	7,832,000	
84G	15,070,000	1,507,000	1,507,000	12,056,000	
114A	20,130,000	2,013,000	2,013,000	16,104,000	
114B	21,450,000	2,145,000	2,145,000	17,160,000	

(2)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계약금)	국민은행	(추후 통보 예정)	무궁화신탁(주)	입금 예시 :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계약서 명시)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공사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계좌는 가상 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국민은행 / 계좌번호 648001-04-225134 / 예금주 : 무궁화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계약금 납부 : 위 명시된 계좌로 해당 동호수 및 계약자를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 시 세대별로 별도 가상 계좌가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ex)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하여야 하며, 위 분양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발코니확장공사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대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 공정에 따라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전장환기구(디퓨저) 위치, 시스템에어컨 및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에어컨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발코니, 실외기실(대피공간)) 등 외부 창호, 그릴 등은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에 대해 입증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추가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된지정, 벽 또는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예: 옆세대 비 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벽체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옵션)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포함되는 지급 품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발코니 확장 공급 계약은 가구, 전자제품 계약과 무관하며, 추후 견본주택에 전시품목으로 설치되어 있던 제품의 미설치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설치장소	실내기 개소	일반형	고급형(공기청정기 기능포함)
전실	59TYPE	거실/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4	6,490,000	7,690,000
	84TYPE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5	8,690,000	10,190,000
	114TYPE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5	9,020,000	10,520,000
거실+안방+주방	59TYPE	거실/주방, 안방	2	3,410,000	4,280,000
	84TYPE	거실, 주방, 안방	3	5,170,000	6,070,000
	114TYPE	거실, 주방, 안방	3	5,720,000	6,620,000

※ 시스템 에어컨 공사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는 기본확장형 기준이며, 향후 평면선택 옵션 선택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 2개소(거실 : 스탠드형, 안방 : 벽걸이형) 냉매배관이 기본 제공되며, 천정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 에어컨 전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및 에어컨 전용 콘센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실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씩 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로 일괄 시공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2) 추가 선택품목 - 가전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10%) 2024.06.07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3구 인덕션	SK매직		IHR-B3200	전 평형	480,000	48,000	48,000	384,000	
기능성 오븐	삼성전자		NQ36A6555CK	전 평형	320,000	32,000	32,000	256,000	
빌트인 패키지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삼성전자 / LG전자 선택제)	LG전자	냉장	BC1L1AA1 (메탈그레이)	59TYPE (김치냉장고 제외)	2,790,000	279,000	279,000	2,232,000	59타입 김치냉장고 제외
		냉동	BC1F1AA (메탈그레이)						
		냉장	BC1L1AA1 (메탈그레이)	84TYPE, 114TYPE	4,560,000	456,000	456,000	3,648,000	키큰장 포함
		냉동	BC1F1AA (메탈그레이)						
		김치	BC1K1AA1 (메탈그레이)						
	삼성전자	냉장	RR40A7995AP(우) RR40A7895AP(좌) (코타화이트)	59TYPE (김치냉장고 제외)	3,120,000	312,000	312,000	2,496,000	59타입 김치냉장고 제외
		냉동	RZ34A7965AP(우) RZ34A7865AP(좌) (코타화이트)						
		냉장	RR40A7995AP(우) RR40A7895AP(좌) (코타화이트)	84TYPE, 114TYPE	5,220,000	522,000	522,000	4,176,000	키큰장 포함
		냉동	RZ34A7965AP(우) RZ34A7865AP(좌) (코타화이트)						
		김치	RQ34A7945AP(우) RQ34A7845AP(좌) (코타화이트)						
빌트인 식기세척기	SK매직		DWA-7505B	전 평형	680,000	68,000	68,000	544,000	
빌트인 커피머신	밀레 (제조사)/ 밀레코리아 (납품사)		CVA 7440	84A, 84E, 84F	3,960,000	396,000	396,000	3,168,000	84A (주방특화 소셜다이닝 특화 선택시 가능)
				114A, 114B	4,170,000	417,000	417,000	3,336,000	
의류관리기(드레스룸) (삼성전자 / LG전자 선택제)	LG전자		S3BOF 미스트베이지/우힌지 (오브제)	전 평형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삼성전자		DF60A8500TG 코타화이트/좌힌지 (비스포크)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3) 추가 선택품목 - 가구, 마감재,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실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10%) 2024.06.07	잔금(80%) 입주지정일	비고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59A	2,310,000	231,000	231,000	1,848,000	
		59B	2,310,000	231,000	231,000	1,848,000	
		59C	2,630,000	263,000	263,000	2,104,000	
		59D	2,240,000	224,000	224,000	1,792,000	
		59E	2,590,000	259,000	259,000	2,072,000	
		84A	1,940,000	194,000	194,000	1,552,000	
		84B	2,410,000	241,000	241,000	1,928,000	
		84C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84D	2,130,000	213,000	213,000	1,704,000	
		84E	4,730,000	473,000	473,000	3,784,000	
		84F	3,010,000	301,000	301,000	2,408,000	
		84G	2,990,000	299,000	299,000	2,392,000	
		114A	2,290,000	229,000	229,000	1,832,000	
		114B	2,290,000	229,000	229,000	1,832,000	
조명 특화 (안방조명, 거실우물천장리니어조명)	거실+안방	59A	4,110,000	411,000	411,000	3,288,000	
		59B	3,870,000	387,000	387,000	3,096,000	
		59C	4,350,000	435,000	435,000	3,480,000	
		59D	3,870,000	387,000	387,000	3,096,000	
		59E	4,110,000	411,000	411,000	3,288,000	
		84A	4,970,000	497,000	497,000	3,976,000	
		84B	5,370,000	537,000	537,000	4,296,000	
		84C	4,890,000	489,000	489,000	3,912,000	
		84D	4,890,000	489,000	489,000	3,912,000	
		84E	5,370,000	537,000	537,000	4,296,000	
		84F	4,890,000	489,000	489,000	3,912,000	
		84G	4,260,000	426,000	426,000	3,408,000	
		114A	5,940,000	594,000	594,000	4,752,000	
		114B	5,260,000	526,000	526,000	4,208,000	
바닥 포세린타일	거실+주방+복도	59A	420,000	42,000	42,000	336,000	
		59B	400,000	40,000	40,000	320,000	
		59C	370,000	37,000	37,000	296,000	
		59D	410,000	41,000	41,000	328,000	
		59E	450,000	45,000	45,000	360,000	
		84A	690,000	69,000	69,000	552,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미선택 시
			650,000	65,000	65,000	520,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선택 시
		84B	700,000	70,000	70,000	560,000	
		84C	640,000	64,000	64,000	512,000	
		84D	700,000	70,000	70,000	560,000	
		84E	600,000	60,000	60,000	480,000	
		84F	700,000	70,000	70,000	560,000	
		84G	650,000	65,000	65,000	520,000	
		114A	880,000	88,000	88,000	704,000	기본형 선택시
			840,000	84,000	84,000	672,000	주방특화(바답+소형가전장 선택시)
		114B	850,000	85,000	85,000	680,000	기본형 선택시
			840,000	84,000	84,000	672,000	주방 특화형 : 바답(50T 인조대리석) 선택시
유럽산 원목마루	거실+주방+복도+침실 (전실)	59A	15,240,000	1,524,000	1,524,000	12,192,000	
		59B	14,880,000	1,488,000	1,488,000	11,904,000	
		59C	14,690,000	1,469,000	1,469,000	11,752,000	
		59D	14,900,000	1,490,000	1,490,000	11,920,000	
		59E	15,550,000	1,555,000	1,555,000	12,440,000	
		84A	22,380,000	2,238,000	2,238,000	17,904,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미선택 시
			21,820,000	2,182,000	2,182,000	17,456,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선택 시
		84B	22,150,000	2,215,000	2,215,000	17,720,000	
		84C	21,090,000	2,109,000	2,109,000	16,872,000	
		84D	22,800,000	2,280,000	2,280,000	18,240,000	기본형 선택시
			22,540,000	2,254,000	2,254,000	18,032,000	주방특화(소형가전장 선택시)
		84E	21,700,000	2,170,000	2,170,000	17,360,000	
		84F	22,620,000	2,262,000	2,262,000	18,096,000	
		84G	21,960,000	2,196,000	2,196,000	17,568,000	
		114A	29,780,000	2,978,000	2,978,000	23,824,000	기본형 선택시
			29,260,000	2,926,000	2,926,000	23,408,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선택시
			29,490,000	2,949,000	2,949,000	23,592,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29,230,000	2,923,000	2,923,000	23,384,000	주방 특화형 : 바답 (50T 인조대리석) + 소형가전장 선택시
		114B	29,250,000	2,925,000	2,925,000	23,400,000	기본형 선택시
			28,630,000	2,863,000	2,863,000	22,904,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선택시
			28,930,000	2,893,000	2,893,000	23,144,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28,990,000	2,899,000	2,899,000	23,192,000	주방 특화형 : 바답(50T 인조대리석) 선택시
바닥 포세린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거실주방복도 (포세린타일)/ 침실(원목마루)	59A	8,310,000	831,000	831,000	6,648,000	
		59B	8,300,000	830,000	830,000	6,640,000	
		59C	8,710,000	871,000	871,000	6,968,000	
		59D	8,130,000	813,000	813,000	6,504,000	
		59E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84A	11,070,000	1,107,000	1,107,000	8,856,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미선택 시
			11,040,000	1,104,000	1,104,000	8,832,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중 그랜드 아일랜드 선택 시
		84B	10,700,000	1,070,000	1,070,000	8,560,000	
		84C	10,640,000	1,064,000	1,064,000	8,512,000	
		84D	11,230,000	1,123,000	1,123,000	8,984,000	
			10,980,000	1,098,000	1,098,000	8,784,000	주방특화(소형가전장 선택시)
		84E	11,860,000	1,186,000	1,186,000	9,488,000	
		84F	11,090,000	1,109,000	1,109,000	8,872,000	
		84G	11,340,000	1,134,000	1,134,000	9,072,000	
		114A	15,350,000	1,535,000	1,535,000	12,280,000	기본형 선택시
			14,830,000	1,483,000	1,483,000	11,864,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선택시
			15,060,000	1,506,000	1,506,000	12,048,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15,320,000	1,532,000	1,532,000	12,256,000	주방 특화형 : 바답 (50T 인조대리석) 선택시
		114B	15,260,000	1,526,000	1,526,000	12,208,000	기본형 선택시
			14,640,000	1,464,000	1,464,000	11,712,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선택시
			14,940,000	1,494,000	1,494,000	11,952,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15,240,000	1,524,000	1,524,000	12,192,000	주방 특화형 : 바답(50T 인조대리석) 선택시
입식빨래볼	다용도실	84A	510,000	51,000	51,000	408,000	
		84F	510,000	51,000	51,000	408,000	
		84G	510,000	51,000	51,000	408,000	
		114A	510,000	51,000	51,000	408,000	
		114B	510,000	51,000	51,000	408,000	
입식파우더형 반침장	침실2	59 TYPE	1,170,000	117,000	117,000	936,000	
		84 TYPE (84B 제외)	1,470,000	147,000	147,000	1,176,000	
	침실1	84B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안방 드레스룸	84A	240,000	24,000	24,000	192,000	
		84B	240,000	24,000	24,000	192,000	
		84C	230,000	23,000	23,000	184,000	
		84D	240,000	24,000	24,000	192,000	
		84G	220,000	22,000	22,000	176,000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침실1 드레스룸	114A	280,000	28,000	28,000	224,000	
		114B	250,000	25,000	25,000	200,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강화 + 슬라이딩 도어 + 알파룸	안방	114A	2,740,000	274,000	274,000	2,192,000	
		114B	3,170,000	317,000	317,000	2,536,000	
안방 파우더 & 드레스룸 선택제 : 파우더룸 수납장 + 슬라이딩 도어 + 대형드레스룸	안방	114A	2,190,000	219,000	219,000	1,752,000	
		114B	2,290,000	229,000	229,000	1,832,000	
주방가구 상부장 / 하부장 조명특화	주방	59A	520,000	52,000	52,000	416,000	
		59B	520,000	52,000	52,000	416,000	
		59C	360,000	36,000	36,000	288,000	
		59D	460,000	46,000	46,000	368,000	
		59E	430,000	43,000	43,000	344,000	
		84A	590,000	59,000	59,000	472,000	기본형 선택시
			670,000	67,000	67,000	536,000	주방특화(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시)
		84B	610,000	61,000	61,000	488,000	
		84C	640,000	64,000	64,000	512,000	
		84D	650,000	65,000	65,000	520,000	
		84E	560,000	56,000	56,000	448,000	
		84F	470,000	47,000	47,000	376,000	
		84G	650,000	65,000	65,000	520,000	
		114A	650,000	65,000	65,000	520,000	기본형 선택시
			830,000	83,000	83,000	664,000	주방특화(바답+소형가전장 선택시)
		114B	750,000	75,000	75,000	600,000	기본형 선택시
			850,000	85,000	85,000	680,000	주방특화(바답 선택시)
아일랜드 특화 (인조대리석 상판 마감)	주방	59A	1,130,000	113,000	113,000	904,000	아일랜드장 조명 : 1면 적용
		59B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59D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59E	1,090,000	109,000	109,000	872,000	
아일랜드 특화 (세라믹타일 상판 마감)	주방	59A	1,130,000	113,000	113,000	904,000	아일랜드장 조명 : 1면 적용
		59B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59D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59E	1,090,000	109,000	109,000	872,000	
주방 벽, 상판 세라믹타일	주방	59A	3,120,000	312,000	312,000	2,496,000	기본형 선택시
			3,470,000	347,000	347,000	2,776,000	아일랜드 특화형 선택시
		59B	2,950,000	295,000	295,000	2,360,000	기본형 선택시
			3,360,000	336,000	336,000	2,688,000	아일랜드 특화형 선택시
		59C	2,010,000	201,000	201,000	1,608,000	
		59D	2,820,000	282,000	282,000	2,256,000	기본형 선택시
			3,330,000	333,000	333,000	2,664,000	아일랜드 특화형 선택시
		59E	2,610,000	261,000	261,000	2,088,000	기본형 선택시
			3,210,000	321,000	321,000	2,568,000	아일랜드 특화형 선택시
		84A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기본형 선택시
			3,920,000	392,000	392,000	3,136,000	주방특화(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시)
		84B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84C	3,950,000	395,000	395,000	3,160,000	
		84D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84E	3,480,000	348,000	348,000	2,784,000	
		84F	2,390,000	239,000	239,000	1,912,000	
		84G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114A	3,940,000	394,000	394,000	3,152,000	기본형 선택시
			4,130,000	413,000	413,000	3,304,000	주방특화(바답+소형가전장 선택시)
		114B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주방	84A	2,350,000	235,000	235,000	1,880,000	소형가전장 : 벽, 상판 세라믹타일+유리도어 상부장 +상하부장 간접조명 포함
소셜 다이닝 특화형 : 그랜드 아일랜드			2,240,000	224,000	224,000	1,792,000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
소형가전장	주방	84D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소형가전장 : 벽, 상판 세라믹타일+유리도어 상부장 +상하부장 간접조명 포함
주방 특화형 : 바답(50T 인조대리석) + 소형가전장	주방	114A	5,790,000	579,000	579,000	4,632,000	소형가전장 : 벽, 상판 세라믹타일+유리도어 상부장 +상하부장 간접조명 포함
주방 특화형 : 바답(50T 인조대리석)	주방	114B	1,260,000	126,000	126,000	1,008,000	
욕실 1 고급 특화 옵션(욕조형) (포세린타일(벽체 유럽산+바닥 중국산)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수전류)	욕실1	59 TYPE	3,070,000	307,000	307,000	2,456,000	
		84 TYPE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114 TYPE	3,210,000	321,000	321,000	2,568,000	
욕실 1 고급 특화옵션(샤워부스형) (포세린타일(벽체 유럽산+바닥 중국산) 블랙매트 프레임 샤워부스+ 아메리칸스탠다드 도기/수전류)	욕실1	59 TYPE	3,210,000	321,000	321,000	2,568,000	
		84 TYPE	3,240,000	324,000	324,000	2,592,000	
		114 TYPE	3,350,000	335,000	335,000	2,680,000	
욕실2 특화옵션 (포세린타일(벽체 유럽산+바닥 중국산) 블랙매트 프레임 샤워부스+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수전류)	욕실2	59C	3,210,000	321,000	321,000	2,528,000	
		59E	3130000	388,000	313,000	2,504,000	
		59~84 TYPE	3,160,000	316,000	316,000	2,528,000	59C, 59E 제외
		114 TYPE	3,880,000	388,000	388,000	3,104,000	
슬라이딩 도어	욕실1	114 TYPE	610,000	61,000	61,000	488,000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_수동형)	현관	전 평형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_자동형)	현관	59~84 TYPE (84B, 84G 제외)	2,990,000	299,000	299,000	2,392,000	
보이스홈	거실+주방+안방	전 평형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H-BELL	거실	전 평형	190,000	19,000	19,000	152,000	
천장형 에어샤워	현관	전 평형	620,000	62,000	62,000	496,000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드레스룸	전 평형	780,000	78,000	78,000	624,000	
광플라즈마 천장형 공기청정기	거실	전 평형	2,160,000	216,000	216,000	1,728,000	
의류 미세먼지 클리너	현관	전 평형	330,000	33,000	33,000	264,000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거실+주방	전 평형	640,000	64,000	64,000	512,000	59B, 84E 제외
		59B	690,000	69,000	69,000	552,000	
		84E	650,000	65,000	65,000	520,000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 114A의 경우 냉장고 옵션에 따라 상판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 84D, 114A의 경우 소형가전장은 세라믹 벽, 상판으로만 적용됩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신발장의 내부 구성 및 길이, 마감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4A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 시에만 그랜드아일랜드 선택 가능합니다. ※ 84A 확장형 주방 선택 시 그랜드 아일랜드 선택 불가합니다.

(4) 무상선택품목

품목	적용실	주택형
파우더장 선택제 (좌식/입식)	안방 드레스룸	84A,84B,84C,84D,84F,84G,114A,114B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의류관리기 공간)	안방 드레스룸	전 평형
파우더장 선택제 (좌식/입식)	침실1 드레스룸	114A, 114B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의류관리기 공간)	침실1 드레스룸	114A, 114B
욕실1 선택제 (욕조형/샤워부스형)	욕실1	전 평형

(5)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4.06.07	입주 지정일

(6)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금)	하나은행	(추후 통보 예정)	현대건설(주)	입금 예시 :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 1010505홍길동
추가 선택품목옵션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계약서 명시)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시공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계좌는 가상 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 계좌번호 201-910031-59104 / 예금주 :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계약금 납부 : 위 명시된 계좌로 해당 동호수 및 계약자를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 시 세대별로 별도 가상 계좌가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ex) 101동 505호 홍길동 당첨자→ 1010505홍길동)하여야 하며, 위 분양대금 납부 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유상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 및 주택형태, 크기, 현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사전 수량확보 계획하는 모델로서, 입주시점의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판단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모델)의 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타 자재(모델)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최종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유상선택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상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유상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선택품목선택 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및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의벽체도장,재료분리대(욕실제외)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경량벽체, 월패드,일괄소등스위치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조명	부착/매입/거치형 조명등기구 (주방매입/복도등 제외)	배관/배선(스위치 및 콘센트), 주방매입/복도등
욕실	욕실천장, 타일(바닥/벽),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포함), 욕실환풍기	방수(바닥, 벽체), 바닥미장, 전기 배관/배선
욕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비데	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주방가구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및 빌트인가전기기류, 주방스마트거치대	소방관련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수납장, 시스템선반류	-
창호	발코니 외부 PL창호, 목재문 및 ABS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디지털도어록, 실외기실용 철재도어, 철재 난간대
옵션품목	선택하는 옵션품목 일체 포함	미설치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산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59A	59B	59C	59D	59E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14A	114B
마이너스 옵션 금액	11,860,000	11,890,000	12,120,000	11,810,000	11,780,000	14,790,000	14,930,000	14,960,000	14,870,000	14,880,000	14,950,000	15,020,000	17,710,000	17,730,000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발코니 확장 및 추가유상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의 상이함(바닥마감재, 벽지 및 장식벽,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시는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유상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세대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 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세대 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해 추후 세대 내 AS 발생 시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인접 세대 주민과의 불화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점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체결 시점 등이 세대 내부 공사 기간 이후 진행될 경우 부득이하게 옵션이 시행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IX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 일반사항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과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명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다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입면디자인(저층부석재 및 도장디자인 등), 출눈, 조경, 색채, 몰딩, 창호, 옥상장식물, BI 위치와 크기 및 개소, 필로티, 외부계단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세대 내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2년 09월 승인(예정)된 사업승인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도심경관위 확보를 위해 '천안시 서북구 기본경관계획'의 도심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기준으로 당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사항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후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건축법」 제26조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동별·층별 공급가격의 상이함을 인지하여야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기재할 기재된 내용과 입주자 자격 부합여부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인지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변경에 대해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 · 민사상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별도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주체에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9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등)의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을"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른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명 등은 현장 상황,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사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공통 - 인허가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장식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②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③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④ 계획도로 및 방음벽의 형태, 위치, 도로연결, 디자인 등

공통 -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현황)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복합시설로 소음, 진동 및 인 외부 인에게 공용부에 대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판매시설 배치구조 및 층·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전정,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천안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역은 와촌초등학교 통학구역이나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중학교 학군 및 고등학교 학교군 등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단지 - 단지설계제척,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단지 외부 사이에 경계 펜스 등은 미설치 예정이며,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및 단지레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녹지,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원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변경)관련(도로, 방향, 형태, 도로교통, 사업 및 단지 외부에 의한 변경 등)에 따라 본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의 위치, 선형 및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등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①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 조망 침해
②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지하주차장 진·출입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등의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③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재활용포함),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환경 등 침해
④ 근린생활시설 상부 인접세대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⑤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 및 산책로·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 권 침해
⑥ 단지 배치계획 상 동 간의 거리가 좁아 세대 상호간의 향에 따라 인동 간 세대 간 관찰 등 발생으로 인한 일조·조망 등의 침해
⑦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에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일조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⑧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전정, 관리사무소 등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등의 설치 등 발생으로 인한 불편
⑨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문주 등 단지 내외 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조경 공간이 협해,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과 썬큰, D/A, 발전기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동별로 도로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업체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절토부/성토부), 산벽 및 조경석 쌓기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상세한 처리방식 및 형태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재질, 마감,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한 공동주택 출입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출입 시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개발에 따라 도로 레벨조정 등 협의에 따라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세대에 일조,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도로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인접한 101동, 103동, 104동, 106동 등의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또는 단지 내부레벨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단지(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필로티가 적용된 각 동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및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조명, 개방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데크 등 옹벽 노출 부위는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일부 설계 마감으로 변경됩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16g입니다.
• 당 사업지는 경부선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접하여 진동, 분진,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 발코니는 단열고려하지 않은 외기에 면하는 공간으로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지 - 동별현황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등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① 건물 외부창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②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팬룸/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주방배기,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집열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에 의한 일조 및 조망 침해 등
③ E/V 운행에 따른 인접 침실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조경시설물 및 공공시설물(단지 내 무선통신의 연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전자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경관조명, 통신장비,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높이,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업체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의 설치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 지상21층 : 101동 PIT, 102동 PIT, 103동 PIT, 104동 PIT, 105동 PIT, 106동 PIT
- 지하1층 : 102동 램프, 105동 램프
- 지하3층 : 102동 램프, 105동 램프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용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획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1층 출입구의 전면에는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동출입구 일부 제외).
• 본 건물 옥상에 야간 경관을 위한 조명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에서는 빛의 간섭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면하거나 인접하는 세대의 경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지붕층), 지하주차장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상부 및 옥탑에는 통신장비의 설치 및 향상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설치위치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설비 및 소방 설비의 종류/판넬/분전반/전기, 분전반과 작동 점검을 위한 공간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인근 건축,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집열판, 안테나경관 조명, 통 기타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세대에 일조, 조망 등 환경권과 조망 및 일부 신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함, 세대창고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현정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설치되며 추후 태양광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 형태, 디자인, 수량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림승, 진동 등의 환경권 및 빛반사로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림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일)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 외관계획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출눈계획, 입면패턴,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등 장식물 및 구조물,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 및 단지 레벨차에 따라 석재와 페인트의 적용높이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문주와 인접하여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 및 빛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문주의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의 경우 문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또는 도장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 세대 환기설비에 따른 급배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조명 등은 관련 인허가 기관의 심의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 공용시설 및 시스템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옥상조경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과정에 따라 내부 평면, 각 실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의 크기 및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결과에 대해 인테리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하여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동 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치 및 이용연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커뮤니티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향후 변경, 추가등을 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오수/배수펌프,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보안방범 시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개정('18.12.24)에 따라 당 사업지는 「주택법」 제35조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반대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운영을 위해 추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단지 - 주차장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장비 등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 단지 레벨차에 의해 각 동, 코어별로 이용할 수 있는 층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확장/일반/장애인용 주차대수 등의 분류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기준 이상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전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으니 주차대수 등의 분포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인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가상의 분할선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101, 103, 104, 105, 106동)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출입문 위치 및 입면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조경계획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평면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사용승인 후 입주 후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두께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만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은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위치가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 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발코니
•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의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인 세대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폭, 깊이) 감소, 천장 마감 및 높이,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유리난간이 포함된 이중창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이 설치되며(비확장되는 안방발코니, 주방발코니 제외), 비확장시에는 발코니창 없이 부분판(창만 설치되지 않으며) 외부에는 위치에 따라 철제난간만 적용됩니다.
• 침실1(안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벽체로 구획되어 있으며, 해당 벽체의 재질, 형태,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최하층 세대를 제외한 전세대에 설치되며 실외기실 상부 천장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사다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등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통상 유지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로비 등 공용공간(공동계단)을 통하여 비상 탈출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로티, 오피스텔 상부 세대의 경우 추후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하향식피난구가 삭제되고 완강기 등 피난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실 수평배관모듈은 주택의 설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발코니 확장세대에 대해 해당 공간 안에서 설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창호
• 단위세대 창호 프레임 색상은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의 난간의 사양(제조사와 모델, 형태 및 사양, 프레임 및 창짝 규격, 유리/하드웨어 사양, 분할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의 사양(툴 디자인, 손잡이, 크기, 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발코니 새시 프레임 및 일반 발코니 새시 형태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의 경우 유리난간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이 설치되며(주방 제외)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소방관진입창의 위치, 크기, 형태, 디자인, 유리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진입창은 101동~103동 20층이하 세대, 104동~106동 19층이하 세대에 설치되오니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 가구 및 마감재
•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 / 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 / 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상 은분당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기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비치하는 냉장고의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성능에 따라 현관문 프레임 및 유리에 따라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실외기실 도어의 크기, 하부벽 단면형상, 재질, 색상, 마감재, 디테일, 설치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식빨래볼 선택시 평형에 따라 하부장 내부 구성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구 내부에 적용되는 하드웨어 및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사양, 디테일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타일 및 세라믹타일의 나누기, 패턴, 두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형 별 주방가구의 내부 구성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평형 별 평면선택제(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확장형 주방가구 대비 가구마감재의 색상, 구성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의 이음부위 및 패턴, 색상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아트월 포세린타일 및 세라믹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세라믹타일 패턴 연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수동형/자동형 유상옵션 선택제에 따라 마감 디테일, 가구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자동형은 일부타입에서는 선택이 불가합니다.(84B, 84G, 114A, 114B)
• 유상옵션(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등) 선택 시 시스템 선반 길이, 마감 디테일이 변경됩니다.
• 유상옵션(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 시 확장형 주방 대비 아일랜드장, 주방 가구 구성, 마감 색상, 상하부장 및 주방 상판의 길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워부스 선택형에 따라 비누턱과 욕실장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14타입 욕실1 유상옵션(슬라이딩 도어)미선택시, 도어 오프닝 구간 프레임만 설치됩니다(도어 미설치)
• 59 전타입과 84E타입 안방 파우더장의 형태는 드레스룸 내부 시스템가구 파우더장으로 설치되오니 모형 및 분양안내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59A, 59B 다용도실의 경우, 세탁기 공간 하부 단턱 측면이 노출되어 있으니 모형 및 분양안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9C 주방의 경우 별도의 식탁공간이 없고 아일랜드형 바탑에서 다이닝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오니 모형 및 분양안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9A, 59B, 59D, 84C 전등식 빨래건조대의 빨래 확장봉 면적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완전히 펼쳐지지 않을 수 있음)
• 84C 거실 아트월 좌측에 실외기실문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4G 현관팬트리 대신 신발장 2개소가 설치됩니다.
• 114A, 114B 현관 중문 선택에 따라 디딤판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4A 유상옵션(주방특화형) 선택 시, 주방 바탑의 상판 마감은 인조대리석이고 소형가전장 상판 및 벽체 마감은 세라믹 타일이 설치됩니다.
• 하부장이 있는 세면대의 경우 하부장 내부에 배수를 위한 배관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인조대리석, 세라믹타일,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전기기계설비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비데 등), 욕실FAN 등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될 예정이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정형 냉난방 에어컨은 유상옵션 시 방문객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치(공기청정)가 설치될 경우 실내 공기순환 등을 위하여 실내 일부 천장 및 벽체 등에 일부 급기구 또는 배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제품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장치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에어샤워 유상옵션 선택 시 세대 내 현관 천장에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배수구, 수전류 및 액세서리,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기구 위치 등의 변경에 따라 조명과 마감재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신발장 또는 침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함 또는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분전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건립 세대의 경우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각 세대별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월패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을 위한 전원 미 입주세대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가구류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 가구 약세서리 주방 가구 약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세대분전반 조명기구 등의 제품 수급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등, 온도조절기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공간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하이오티(카투홈 서비스 내용 포함) 및 보이스홈(유상옵션으로 홈투카 서비스 내용 포함) 서비스는 현대건설 특화 시스템이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생활가전은 시스템에어컨 선택세대에 한하여 적용됨)
-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홈투카(유상옵션)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당 2개가 지급됩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시설물(욕실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마트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입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옆면이나 뒷면에 PDU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에 PDU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살균청정환기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전열교환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광플라즈마 램프가 설치되며 램프는 연 1회 교체를 권장합니다.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램프의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부담입니다.
• 현관에어샤워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의 일부 수납공간이 줄어들며 현관에 설치되며 수납공간이 제한됩니다.
• 현관에어샤워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세대의 경우 중문 개방 후 사용시, 세대 안으로 먼지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 그릴의 제품, 재질, 색상, 디테일, 설치위치 등은 성능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54조에 의거 마감자재 품목 리스트는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세대 단자함, 세대 분전함 등은 상황에 따라 제품사양 및 디자인,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114A타입이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미건립 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 114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또한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대 및 단지의 공간 활용도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확인된 단지와 실제 단지 및 세대의 층간, 개소 등 창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현황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환기구, 스피커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장치, 천장환기구(디퓨져), 수전,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배수배관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견본주택 내 전시품 설명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상하부 마감자재 및 비교 후 전시품,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시공물 등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어 비확장형 세대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본주택 일부 연출부분이 실제 시공되지 않는 사항이며 입주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을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용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자 제시된 공급안내물등을 포함한 설계 변경 및 세대 구성에 따라 실제 시공되지 않거나 별도 선택 세대와 세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공사에서는 제외되며, 주택 내 각종 시설물의 전개(위치, 이를 통한 배치 등)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대체로 본 공사시 가 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골조의 이질벽체(경량벽체 조적벽, 경량콘크리트 패널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성의 이유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견본주택의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일부 구간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프트리카우,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의 경우 빌트인 키친 냉장고 선택 옵션 여부에 따라 상판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가전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의 경우 빌트인 주방가전 선택 옵션 여부에 따라 키큰장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84A, 84D, 114A의 경우 소형가전장은 세라믹타일 벽 및 상판으로만 적용됩니다.
• 주방 평면선택제 유상옵션 선택시 114A의 경우 기본형과 다른 구성으로 선택형 적용됩니다.
• 바닥 마감선택제 유상옵션 포세린타일 선택시 복도팬트리, 주방 팬트리 바닥은 포세린타일이 적용됩니다.
• 114A, 114B의 경우 욕실 1의 세면대 하부는 기본 포세린 타일입니다(욕실 1 내부의 바닥타일과 다른 타일로 시공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신발장 내부 구성 및 길이, 마감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류관리기 공간(유상옵션)과 의류관리기(제품/유상옵션)은 선택 여부에 따라 시스템 선반 내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의류관리기는 별도 유상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입식빨래볼(유상옵션) 길이 및 구성은 타입 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천연가공석, 엔지니어드스톤(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 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절제방화문(현관문, 실외기실 도어 등)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등 제품 부위 및 내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붙박이가구의 경우 주 벽체 시공 오차범위에 따라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이음 부분은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일벽 부분의 하부판 구성 및 하드웨어, 약세서리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벽체 및 바닥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의 위치 및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장문(실 제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사항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방지가 되도록 시공되며, 욕실화의 높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만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중문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도어의 손잡이, 차폐 및 자동, 도어 등의 문틀 도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욕실 바닥 및 벽, 현관 바닥, 아트월 등) 및 세라믹타일(거실 아트월 벽체, 주방 상판/벽체(유상옵션)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선택형 평면(유상) 선택에 따라 도어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라믹타일 주방 상판 및 벽체(유상옵션)은 이음매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유상옵션) 선택 시 시스템선반의 길이, 마감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처리 대상 등 할 수 없어 명확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신발장 가구 구성 및 주변 마감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슬라이딩도어 + 일반가구 반침장 유상옵션은 내부 구성이 상이하며, 가구 내부의 구성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드레스룸 은경의 규격은 상이하며, 본공사 시 은경의 사이즈 및 가구 마감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주방 세라믹타일 상판 및 벽체의 이음부위는 상판 및 벽체의 이음부위의 이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 84A 유상옵션(주방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 시, 아일랜드 하부장 색상 및 내부 구성이 달라집니다.
• 84A 유상옵션(주방 소셜다이닝 특화형) 선택 시, 아일랜드 하부장 색상 및 길이 및 높이가 달라집니다.
• 84A, 84D, 114A,114B 타입 유상옵션(주방 특화형) 선택 시에만 아일랜드 혹은 바탑, 소형가전장에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본공사시 주방 상부장 단부에 가스배관 또는 가스배관 커버가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X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외기조건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인증받은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난방, 급탕및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실별 온도조절 장치 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및동력설비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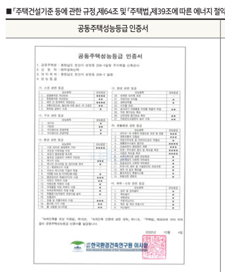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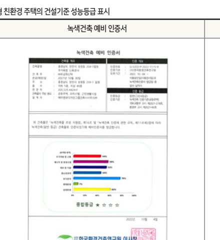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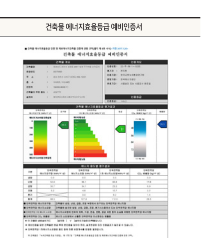

■ 내진설계 등급

지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	내진설계범주	건물 중요도
0.19	S4	1.2	D	1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16g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성종합기술단	㈜성우엔지니어링	㈜성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6,303,970,000	₩858,463,636	₩795,500,000	₩236,5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 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	㈜무궁화신탁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0, 101호, 102호, 1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3,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계동)
사업자등록번호	429-87-01481	594-81-00464	120-86-58362	101-81-16293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 매도자 겸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현대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는 신탁계약 및 본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채무 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가 부담합니다.
▪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 및 시공사 현대건설㈜이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위탁자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와 수탁자 ㈜무궁화신탁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또는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공급계약서에 대한 분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그 일체가 포괄적으로 위탁자인 주식회사 건사플러스, 주식회사 도시미학디앤씨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분양대금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 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명시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주요내용(※본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2-101-0013400	일금 삼천오백사십오억육천이백사십삼만원정 ₩ 354,562,243,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하지 아니하는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의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의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게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자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자 및 공동명의 간자인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서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3분의 2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토지명도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⑤ 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⑥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⑨ 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새로운 입주예정일을 정하여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3.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와 협의되는 기간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 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입주금 반환 당시 은행 법정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 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에서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납부기일까지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입주금 반환 당시 은행 법정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서개정 2019.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 2019.7.25.>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홈페이지 : https://www.hillstate.co.kr/s/#skyum
■ 견본주택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5번지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577-3565 | 12월 오픈

아파트 전용 59㎡·84㎡·114㎡ | 총 999세대 오피스텔 전용 84㎡ | 총 80실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 시행위탁자 (주)건사플러스, (주)도시미학디앤씨 시공 현대건설